

■ 관련 법령 ■

경영관련 일반 조문

- **현행법 제22조의3(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)**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(兼營)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
 2.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
 3.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·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**현행법 시행령 제21조(자산관리회사의 경영제한의 예외)**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정한다.
 - 1의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(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른 업무를 포함하되, 제1호에 따른 신탁업 외의 신탁업은 제외한다)
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. 다만, 자산관리회사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8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한다.
 3.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·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. 다만,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겸영(兼營)할 수 없다.
 4.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·관리·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. 다만,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는 제외한다.
 5.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무수탁회사의 업무
 6.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

경영에 따른 변경인가

- **현행법 제40조(변경인가 등) ④**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,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**현행법 시행령 제42조의4(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) ①** 법 제40조제4항에서 “시설계획,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1. 전산설비,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
 2. 주요 주주 및 최대 주주의 구성에 관한 사항
 3. 경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 4. 인가 당시와 동일성이 달라지는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경영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경영사실에 대한 보고

- **현행법 제41조(보고 사항) ②**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5. 그 밖에 투자자 보호,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**현행법 시행령 제43조(보고 사항) ③**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5. 경영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의 착수 및 완료 사실
- **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(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) ①**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8. 영 제21조에 따른 경영사실

겸영인력에 대한 구분

- **현행법 제22조의3(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) 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3.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
- **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제20조(자산관리회사의 인가) ④** 경영진 및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.
3.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·운용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

겸영인력에 대한 구분 → 근거로서 이견 있음

- **현행법 시행령 제21조(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) ②**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·운영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의 회계·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**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제20조의2(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) ③** 자산관리회사는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가로 겸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.
2.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(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)를 받은 사업의 업무와 추가된 겸영업무를 구분하여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